

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939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19년 8월 7일
- 라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
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·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,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이에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대상기관 : 서울신용보증재단

나. 주요사무 : 소기업·소상공인의 신용보증,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
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

다. 추진근거
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
-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라. 출연의 필요성

-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·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, 교육·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¹⁾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 편성 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의 적정성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, 「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해 설립되어(1999.6),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소재 소기업·소상공인의 채무 보증과 원활한 자금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왔음.
- 최근 5년간 출연금 추이를 살펴보면, 서울시의 출연금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, 금융회사 출연금과 비중이 크게 증가해 기본 재산과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음.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〈최근 5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내역〉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보증공급액	16,199	12,416	12,368	13,372	15,000	16,000
(A) 보증잔액	35,407	36,709	37,030	37,971	39,000	40,000
연간 출연금 조성액	661	465	381	397	585	② 485
서울시	344	190	65	48	66	90
정 부	19	0	0	-	0	0
자치구	11	5	6	4	3	4
금융회사 법정출연	90	75	55	43	50	50
금융회사 임의출연 등	197	195	255	302	466	341
당기순손실	377	343	346	228	446(추정)	③ 425
(B) 기본재산	5,820	5,942	5,973	6,150	① 6,289(추정)	④ 6,349
운용배수=(A/B)	6.08	6.18	6.20	6.17	6.20	6.30

※ ④ 기본재산 = ① 전년도 기본재산 + ② 당해연도 출연금 - ③ 당해연도 당기순손실

- 보증공급액 : 최근 보증공급 규모 감안 (정부의 보증확대 기초 감안 전년대비 증가 예상)
- 출연금 채널별 예상금액 : 자치구(최근 3개년 평균), 법정출연(준고정액), 임의출연(최근 3개년 평균)
- 당기순손실 : 중기재정계획 고려 (2019년 당기순손실 및 기본재산은 추정재무제표에 따름)

- 그러나 금융회사의 임의출연금은 금융위기나 회사의 수익성 악화 등 대외변수에 따라 언제든지 축소·중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며, 출연금에 상응하는 조건 이행 등 부수적인 행정 처리로 본연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.
- 따라서 재단이 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기관이자 서울시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공재정의 출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.
- 서울시는 보증정책의 목표 달성과 재단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

3개년 평균 운용배수²⁾인 6.3배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, 90 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임.

- 이는 2017년 이후 최대 출연규모이며, 금융기관 출연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적정운용배수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됨³⁾.
- 한편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무분별한 선심성·낭비성 출자·출연을 방지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출자·출연 동의안에 “추진 근거 및 필요성,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”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개정(2019.7.19.)되었음.
- 또한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“출자·출연하는 금액이 전년보다 10%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▷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, ▷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, ▷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.
- 이상의 법령과 조례 개정 사항은 재단과 같이 전년 대비 10%를 넘는 출연금(전년대비 36.8% 증가)을 출연하는 경우, 심의위원회의

2) 보증잔액 대비 기본재산 비율

3)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상 최대 운용배수는 15배이나,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 감당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로 5~7배를 유지하고 있음.

의결사항과 타당성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소요예산과 산출 근거 자료를 동의안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의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임.

- 그러나 이번 동의안에는 소요예산과 산출근거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타당성 자료 등을 누락하여 관련 안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, 향후 강화된 동의안 심의 사항에 맞춰 사전 이행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임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나래	02-2180-8057